

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할인 특약 I

제 1조 [목적]

제 2조 [용어의 정의]

제 3조 [특약의 적용대상 및 적용기간]

제 4조 [보험요율의 적용]

제 5조 [기타 사항]

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할인 특약 I

제 1조 [목적]

이 특약은 보험회사(이하 '회사'라 합니다)에서 별도로 정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.

제 2조 [용어의 정의]

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,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계약자 : 회사와 보험계약(이하 '계약'이라 합니다)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.
2. 보험기간 :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.
3. 갱신 보험기간 : 갱신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.
4. 갱신계약 : 보험기간 만료 후 계약의 약관의 의해 갱신된 계약을 말합니다.

제 3조 [특약의 적용대상 및 적용기간]

- ① 이 특약은 2009년 10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된 보험계약 중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갱신이 도래하는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. 다만, 노후·유병력자·여행 실손의료보험 및 단체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합니다. (대상상품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 별지 ' [별표] 대상상품 및 할인율' 참조)
- ② 이 특약의 적용기간은 해당 갱신 보험기간으로 하며, 차회 이후 갱신 시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제 4조 [보험요율의 적용]

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기간 동안 계약자가 납입하는 영업보험료에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(이하 '안정화할인 I'이라 합니다)을 적용합니다.

제 5조 [기타 사항]

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갱신계약의 약관을 준용합니다.